

##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3일  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### 1. 조 례 명 :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개정이유

-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 전문가 3분의 2를 두도록 하는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 정비 (안 제10조)
  - 심의회 구성위원 : 5명 이상 7명 이하 ⇒ 5명(또는 7명)
  - 당연직 위원 : 부군수, 행정과장, 재무과장 ⇒ 부군수, 군 정보공개책임관

### 4. 의견 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
영동군의회

- 전 화 : 043)740-3088, FAX : (043)740-3039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조례 제 호

##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5명 이상 7명 이하”를 “5명(또는 7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4항제1호 중 “행정과장, 재무과장”을 “군 정보공개책임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시작하고”를 “개의하고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<u>5명 이상 7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부군수, <u>행정과 장, 재무과장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⑤ (생 략)</p> <p>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시작하고</u>,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⑦ (생 략)</p>	<p>제10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 <u>5명(또는 7명)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군 정보공 개책임관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<u>개의하고</u>-----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